

제326회 임시회

2014. 1. 21(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
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6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고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(안 제4조)

-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증가 및 입·출구 도로폭 신설
 -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, 입·출구 도로폭 규정 없음
- ⇒ 전시시설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, 입·출구 도로폭 8미터 이상
(단, 기존 도로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)

나.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변경(안 제6조)

- 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 완화
 - 사업장 면적 100㎡ 이상 ⇒ 시설면적 50㎡ 이상

다.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변경(안 제7조)

○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 세분화

- 사업장 대지 확보기준 3천㎡ 이상

⇒ 시설면적 4,500㎡ 이상

(해체작업장 600㎡ 이상, 부품보관창고 600㎡ 이상, 사무실 등을 포함)

라.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 규정 및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, 제7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에서 정한 용어를 현행 조문과 일치시키고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고,

○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¹⁾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1) [별표 21의2]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(제111조의2 관련)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나,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일부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며,
-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가. 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나. 자동차 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등록 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및 시행령 제30조(용도지역세분)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,
 - 청주시의 경우 「청주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라 유통상업지구와 자연녹지 지역에만 매매업 등록이 가능함.
 - 또한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'사전심사청구제도'를 운영하여 신청지역에 대한 문화재, 농지, 폐기물, 환경, 배출시설, 도시계획, 산지관리, 하수도정비, 도로 등 개별법규에 대한 저촉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, 매매업체 난립, 환경오염 등에 대한 일부 의견은 타당함이 부족하다고 사료됨.
- 도로폭 규제 수위에 대한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
 - 조례 제정 당시 도로폭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며, 상위법에서

규정하는 해당 요건을 갖추고 개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였으며,

- 우리도의 매매업 등록 배경과 타시도의 매매업 등록 배경이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로폭을 12m로 규정할 경우 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해 정책의 일관성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폭을 8m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다만,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(도로폭 규제수위)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관련부서, 매매업체,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청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.